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3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2월 3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이 공항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
용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항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것
은 다른 한정면허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
관련 조문에서 ‘보조’ 용어를 삭제하도록 함

2. 주요골자

- 조례안의 내용 중 “보조하거나 용자”, “보조나 용자”에서 보조를
제외하고 “용자”로 수정함(제8조제3항, 제4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융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6조(제5항은 제외한다)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”는 “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”로 본다.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융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6조(제5항은 제외한다)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”는 “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”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